

처리결과

-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측량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접시행에 대한 적정성 및 도로 지반고의 적절성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-9578(2006. 12. 28)회신
-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※ 기타사항 :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검토한 결과
 - 충청북도지사의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송 근거
 -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항 : 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.
 - 행정심판법 제6조 2 :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심판위원회를 둔다.
 - 행정심판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동조 제5항 : 심판청구서를 받은 10일이내(정당한 권한있는) 재결청 송부
- 지방도 측량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행의 적정성
- 민원이 제기된 청원군 남일 ~ 대전 신탄진 구간 도로는 도로법 제11조에 지방도 성격과 아울러, 도로법 제2조의 3 규정에 의한 국도를 보조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.
-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사업계획 및 조사·설계권은 도로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권한이므로
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건설교통부장관(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)이 본 진정민원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의 측량설계를 시행한 것은 하자 없는 행위임. <p>- 도로지반고 변경의 적정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도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봄.
처리부서	충청북도지사(법무통계담당관실, 건설재난관리본부 건설정책팀), 대전지방국토관리청

처리결과

- 토지소유자 동의)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 불가 결정을 하였으며
- 또한, 제출된 동의에 관한 서류도 각종 동의율 계상의 부적합 판정을 함으로써 (가칭)용담(호미)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한 행정적·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므로
 - 본 탄원서에 대한 우리 도의회의 의사표시는 행정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것이 공익적 실익이 있다고 사료됨.
 - 다만, '06. 6. 30일 충청북도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으로 제출된 “용담(호미)지구택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서”에 대한 심의 결정시와 충청북도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시에 용담(호미)지구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과 아울러, 도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방향으로 추진토록 통보.

처리부서

충북개발공사, 균형발전본부 지역개발팀